

1. 안 건 명

-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·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제출일자 및 제출자

- 제출일자 : 2011년 11월 17일
- 제 출 자 : 마포구청장

3. 의안 회부일자

- 2011년 11월 22일

4. 근거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의2제5항

[검토보고]

서울특별시 마포구 통·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동 개정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」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의 근거조항이 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제6항에서 제4조의2제5항으로 변경되고, 통장의 정년을 기존으로 복귀시키고 통·반장의 방문 활동을 명확히 하여 지역복지를 위한 인적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제출된 것임

<주요내용>

- (1) 안 제1조(목적)에 “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” 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의2제5항에 따라” 로 개정
- (2) 안 제 제5조제2항에서는 “임기 중 해당 통장의 연령이 위촉자격 상한연령을 초과하면 당연 해촉된다.” 로 통장 정년 조문 변경
- (3) 안 제7조제1항의9호 중 “저소득층 수혜자 추천협조” 를 “저소득층 지원사업 협조” 로 임무를 일부 변경
- (4) 안 제10조제2항에서는 “통·반장에게 구정, 시정, 국정에 대한 다양한 행정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문, 잡지 등 구독을 지원 할 수 있다.” 라고 편의제공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
- (5) 알기 쉬운 현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

<검토의견>

- 동 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」의 일부개정예에 따라 관련 조항을 변경하고, 지역실정에 밝고 지역을 위하여 실질적인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통·반장에 대하여 임기와 임무 및 편의제공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조항의 내용을 변경 또는 신설하여 동 행정보조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려는 것으로서,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와 입법예고를 거쳐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